

# 이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·관리 조례

소관부서 : 도로관리과

제정 2020· 6· 30 조례 제1614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이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가로등”이란 「도로법」 제10조 및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 제4조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.
2. “보안등”이란 주택가 골목, 농촌자연마을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.
3. “유지관리”란 가로등 및 보안등(이하 “조명시설”이라 한다)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일상정비하거나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거나 이설 또는 철거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로 보존하는 행위를 말한다.

**제3조(설치 등)** ① 조명시설은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한다.

- ② 도로개설, 택지조성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천시와 협의하여야 하며,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설치기준)**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조명시설의 시공은 관련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한다.
2. 소요자재는 KS표시품, 규격품, 승인품을 사용한다.
3.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한다.
4.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
5. 조명시설에 설치하는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설치(다만, 가로등은

지상으로부터 8미터 이상, 보안등은 지상으로부터 5미터 이상으로 설치)

6. 점멸장치는 지상 2미터 이상 2.5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 또는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 설치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.

**제5조(설치 우선순위)**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사건·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
2.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해가구가 많은 지역
3. 아동·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
4.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

**제6조(설치제한)**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.

1. 개인의(집 마당, 축사, 사업장 등)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
2.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(단,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)
3.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내
4. 그 밖에 시장이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

**제7조(설치 및 관리계획)** 시장은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 분기마다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신청절차)** 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(이하 “설치 신청서”라 한다)를 읍·면·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지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② 읍·면·동장은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조명시설 설치를 요청한다.

③ 시장은 해당 설치 신청서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7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.

**제9조(관리대장 및 표찰)** ① 시장은 조명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점검 및 보수)** ① 시장은 「전기용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고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조명시설 이설)**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천시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 할 수 있다.

1.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
2. 조명시설의 환경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3.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③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.

**제12조(훼손시설의 복구)** 시장은 조명시설을 훼손한 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위반행위에 대한 조치)** 시장은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.

1.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회수
2.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

**제14조(조명시설 수리)** 시장은 조명시설의 안전문제 또는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

이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·관리 조례

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수리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##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

설치위치(주소)	
(가로등·보안등) 수혜가구 및 주민수	
설치사유	
기타의견	
비고 (전신주번호 등)	

※ 첨부 : 설치지점 약도 또는 현장사진 1부.

위와 같이 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주소 :

성 명 : (인)

연 락 처 :

○○○ 읍·면·동장 귀하

